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88
----------	-------

발의연월일 : 2025. 10. 14.

발 의 자 : 이용우 · 박민규 · 민병덕
김 윤 · 이주희 · 박지혜
박정현 · 임미애 · 백승아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퇴직금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 장기간 근무한 공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조건 및 지급률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불임금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고 설시하였고(헌법재판소 1998.6.25. 선고 96헌바27,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408 등), 대법원도 “사용자가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그럼에도 2024년 총 임금채불액이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근로자의 후불임금인 퇴직급여 채불액이 그 중 8,229억

원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음.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퇴직일시금 제도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및 투자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현재의 일시금 또는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현행 형태를 유지하여,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후소득보장의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하던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여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의무화함(안 제2조 제6호 등).

나.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적립의무는 2027년 상시 100인 이상, 2028년 상시 5인 이상, 2030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함(부칙 제1조 단서).

다. 사용자가 사외적립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종래의 사내적립 퇴직일시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사내적립의무 및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신설함(안 제8조).

라. 퇴직급여제도 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와 퇴직금

여제도 설정 의무를 병존시키고,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강제하기 위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신설함(안 제11조, 안 제49조 신설 등).

마. 국가가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부칙 제2조).

바.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관한 적용례 및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게 된 경우의 전환에 대한 적용례를 마련함(부칙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을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를 “설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퇴직금의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 적립 현황을 알려야 한다.

④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의 적립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연 1회 이상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사용자”를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를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를 “제4조제1항 본문”으로, “퇴직급여제도나”를 “퇴직급여제도나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 또는”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를 “퇴직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지급 방법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의무와 제4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를 “제4조제3항에 따라”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를 “동의를 얻어”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를 “제4조제3항에 따라”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를 “동의를 얻어”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를 “제4조제3항에 따라”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를 “동의를 얻어”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일시금”을 “일시금이나 퇴직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 및 제5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제1호의4부터 제1호의6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적립 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의 적립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5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제4조, 제8조, 제11조, 제24조, 제48조, 제4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 2028년 1월 1일

3.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30년 1월 1일

제2조(퇴직급여제도 조기도입 지원) ① 국가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퇴직금제도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는 사용자에게 재정부 지원을 실시하거나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부 지원 및 조세 감면의 대상,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퇴직급여제도 설정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의 사용자는 부칙 제1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2035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

자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은 가입기간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근로자가 전환 전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가입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3.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퇴직급여제도”란 <u>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u> 7. ~ 16. (생 략)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u>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 -----. 7. ~ 16. (현행과 같음)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u>아니한다.</u>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 ----- ----- -----. ----- ----- ----- ----- <u>아니하</u> <u>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

----- 설정하고,
이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퇴직

<신 설>

② (생 략)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
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
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

금의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
로자에게 퇴직금 적립 현황을
알려야 한다.

④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퇴직금의 적립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연 1회 이
상 신고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제4
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제
도를 설정한 사용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
에 따른 처리) ① 제4조제1항
본문-----
퇴직급여제도나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 또는 -----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신 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퇴직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 방법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의무와 제4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 제4조제3항에 따라 -----
----- 동의를 얻어 -----

-----.

1. ~ 11. (현행과 같음)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

의 설정) ① -----

제4조제3항에 따라 -----

----- 동의를 얻어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설정) ① -----

제4조제3항에 따라 -----

----- 동의를 얻어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3. (생략)

③ ~ ⑤ (생략)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3. (생략)

제4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

1. ----- 일시금이나 퇴직금---

2.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

----- 제4조제1항-----

-----.

② 3.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적립 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의 적립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

1. ~ 1의4. (생략)

2. ~ 5. (생략)

③ (생략)

<신설>

한 사용자

1의3. ~ 1의6. (현행 제1호부터
제1호의4까지와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
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
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
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
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이
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
당 25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
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 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 강제징 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	--